

IFRS in Focus

IASB,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

목차

- 제안된 추가 공시사항
- 시행일과 경과규정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요점

- 공개초안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개념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 공개초안은 IASB와 FASB가 수행한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US GAAP의 상계규정을 IAS 32의 기존 상계원칙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공개초안은 추가적으로 유용한 적용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AS 32의 상계원칙은 변경되지 않는다.
- 공개초안은 상계대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새로운 추가 공시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기한은 2011년 4월 28일이다.

2011년 1월 28일 IASB는 ED/2011/0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라는 제목의 공개초안(이하 'ED'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이번 ED는 IASB와 FASB 간의 논의로부터 나온 성과이며, 그 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회계기준의 통합(convergence)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ED는 현행 IAS 32의 상계원칙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ED에서는 미래 사건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는 상계권리는 무조건적인 상계권리로 적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계권리가 단지 특정일 이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계권리는 무조건적인 상계권리로 적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에는 조건부 상계권리이지만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무조건적인 상계권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ED는 상계대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상계규정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기한은 2011년 4월 28일이다.

제안된 추가 공시사항

기업은 이번 ED의 규정에 따라 매 보고일에 상계된 자산과 부채 및 상계권리가 존재하지만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표 형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IASB와 FASB는 제안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feedback을 구하고 있다. IASB와 FASB는 이번 ED의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방법을 다루는 최근의 의견조회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feedback을 고려한 후 최종 기준서의 시행일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표시와 공시규정은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및 Deloitte member firms는 본 출판물에 근거한 결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